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동원 의원 발의)

의안 번호	2242
----------	------

발 의 년 월 일: 2024년 10월 16일

발 의 자: 신동원 의원(1명)

찬 성 자: 강석주, 고광민, 김동욱,  
김영옥, 김영철, 김용호,  
김원태, 김재진, 김태수,  
김형재, 김혜영, 남궁역,  
남창진, 도문열, 문성호,  
민병주, 박강산, 박 석,  
송경택, 신복자, 심미경,  
옥재은, 윤기섭, 이병윤,  
이봉준, 이상욱, 이성배,  
이원형, 이종환, 임종국,  
최진혁, 홍국표, 황철규  
의원(33명)

## 1. 제안이유

- 저출생으로 인한 미래 성장동력 감소와 국가 소멸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커지고 있는바 이에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의 주거비 지원과 함께 출산 육아 지원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1인 자영업자등 가구를 적극 발굴하여 지원하고 영유아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해 육아용품 구매를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1인 자영업자등”용어 정의 (안 제2조제9호 신설)
- 나. 1인 자영업자등 출산급여·출산휴가급여 지원 근거 마련(안 제4조의8 신설)
- 다. 자녀출산 무주택 가구에 대한 주거비 지원 근거 규정(안 제5조제1항 제8호)

라. 임신부, 영유아 양육가정 대상 육아용품 구매 지원 근거 마련(안 제5  
조제1항제7호)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참조

##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1인 자영업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근로복지기본법」 제95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1인 자영업자”

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의 적용을 받는 “노무제공자” 및 “플랫폼 종사자”

다. 「예술인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술인”으로 「예술인복지법」 제4조의4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

라. 「서울특별시 노무제공자 및 프리랜서 권익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프리랜서”

마. 기타 고용보험 수급요건 미충족 근로자, 고용보험법 적용제외 사업의 근로자, 고용보험 미성립사업장의 미가입근로자

제4조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8(1인 자영업자등 출산·휴가급여 지원) ① 시장은 1인 자영업자등의 모성보호와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급여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1인 자영업자등 임신부 출산급여·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1인 자영업자등 출산급여·출산휴가급여 지원 관련 사무의 일부를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5조 제1항 제7호를 각각 제9호로 하고, 제7호,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임신부, 영유아 양육가정을 위한 육아용품 구매 지원

8. 자녀출산 무주택 가구를 위한 주거비 지원 사업

제5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 제4항을 신설한다.

제3항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무의 일부를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4항 시장은 각 호 사업에 따른 전부 또는 일부를 시 출자·출연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1인 자영업자등 출산·휴가급여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8의 신설 규정은 2024년 4월 22일 이후 출산한 1인 자영업자등 또는 출산한 배우자 둔 1인 자영업자등부터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신 설〉</p>	<p>제2조(정의)</p> <p>9. “1인자영업자등” 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p> <p>    가. 「근로복지기본법」 제95조의2제1         항제2호에 따른 “1인 자영업자”</p> <p>    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         15의 적용을 받는 “노무제공자”         및 “플랫폼 종사자”</p> <p>    다. 「예술인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술인”으로 「예술인복지         법」 제4조의4에 따른 문화예술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다른 사         람을 사용하지 않고 자신이 직         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p> <p>    라. 「서울특별시 노무제공자 및 프         리랜서 권익보호와 지원에 관         한 조례」 제2조에 따른 “프리랜         서”</p> <p>    마. 기타 고용보험 수급요건 미충족         근로자, 고용보험법 적용제외         사업의 근로자, 고용보험 미성         립사업장의 미가입근로자</p>

	<p><u>제4조의8(1인 자영업자등 출산·휴가 급여 지원) ① 시장은 1인 자영업자 등의 모성보호와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급여를 지원할 수 있다.</u></p> <p><u>② 시장은 1인 자영업자등 임신부 출산급여·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u></p> <p><u>③ 시장은 1인 자영업자등 출산급여·출산휴가급여 지원 관련 사무의 일부를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u></p>
<p>제5조(자녀 양육부담 경감) ① 시장은 자녀 양육에 따른 부담 경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해야 한다.</p> <p>1 ~ 6 생략</p> <p><u>7. 그 밖에 시장이 자녀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u></p> <p><u>③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자치구</u></p>	<p>제5조(자녀 양육부담 경감) ① 시장은 자녀 양육에 따른 부담 경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해야 한다.</p> <p>1 ~ 6 현행과 같음</p> <p><u>7. 임신부, 영유아 양육가정을 위한 육아용품 구매 지원</u></p> <p><u>8. 자녀출산 무주택 가구를 위한 주거비 지원 사업</u></p> <p><u>9. (현행 제7호와 같음)</u></p> <p><u>③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무의 일부를</u></p>

<p><u>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u></p> <p><u>〈신 설〉</u></p>	<p><u>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u></p> <p>④ <u>시장은 각 호 사업에 따른 전부 또는</u> <u>일부를 시 출자·출연기관에 위탁할</u> <u>수 있다.</u></p>
<p>&lt; 부칙 &gt;</p> <p>(신설)</p>	<p>&lt; 부칙 &gt;</p> <p><u>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u> <u>부터 시행한다.</u></p> <p><u>제2조(1인 자영업자등 출산·휴가급</u> <u>여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u> <u>8의 신설 규정은 2024년 4월 22일</u> <u>이후 출산한 1인 자영업자등 또는</u> <u>출산한 배우자 둔 1인 자영업자등</u> <u>부터 적용한다.</u></p>

#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I. 비용추계 요약

###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번	조·항	추계대상 여부	판단 내용
1	제4조의8 (1인 자영업자등 출산·휴가급여 지원)	○	1인 자영업자등 출산·휴가급여 지원 비용발생 ⇒ 총비용 17,688,000천원 발생
2	제5조(자녀 양육부담 경감)제1항	제7호	영유아 양육가정 육아용품 구매 지원 비용발생 ⇒ 총비용 5,260,450천원 발생
		제8호	자녀출산 무주택 가구대상 주거비 지원 비용발생 ⇒ 총비용 80,641,250천원 발생
3	제5조(자녀 양육부담 경감)제4항	×	위탁관련 내용으로 별도 비용소요는 없을 것으로 예상 <sup>1)</sup>

### 2. 비용추계의 전제

#### 가. 대상

- 1인 자영업자등 출산·휴가급여 지원비용(안 제4조의8)
- 영유아 양육가정 육아용품 구매 지원 비용(안 제5조제1항제7호)
- 자녀출산 무주택 가구 주거비 지원 비용(안 제5조제1항제8호)

#### 나. 전제

- 1인 자영업자등 출산·휴가급여 지원 관련
  - ① 1인 자영업자 등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원
    - (대 상 자) 1인 자영업자 등 배우자를 2,092명<sup>2)</sup>으로 전제(매년 동일을 전제)
    - (지원금액) 800천원<sup>3)</sup>을 전제(1회 지급)
  - ② 1인 자영업자 등 임신부 출산급여 지원
    - (대 상 자) 1인 자영업자 등 임신부를 2,060명<sup>4)</sup>으로 전제(매년 동일을 전제)
    - (지원금액) 900천원<sup>5)</sup>을 전제(1회 지급)

1) 사업수행 방식(위탁)에 관한 내용으로 예산과목에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Ex. 공공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2) 지원인원(배우자) 산출근거

- 1인 자영업자 : 1,032명=51만6천명('23년)×0.4%(출생아 비율)×50%(남녀비율)

- 노무제공자 등 : 1,060명=약 53만명 추산('22년)×0.4%(출생아 비율)×50%(남녀비율)

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상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인 10일분의 통상임금(상한액 803,820원) 수준 지원

4) 지원인원(임산부) 산출근거

- 2023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실적 기준

⇒ 1인 자영업자 1,024명 / 프리랜서 및 특고자 등 1,036명

5) 고용보험법 적용 대상자는 출산급여 하한액 240만원을 보장받고 있으며, 고용보험 미적용자 1인 자영업자 등은 고용노동부에서 자체사업으로 150만원을 지원하고 있어, 서울시가 9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여 하한액 수준 보장

○ 유아 양육가정 육아용품 구매 지원 관련

① 탄생응원상품권 발행 할인보전금

- (대 상 자) 145,462가구<sup>6)</sup>로 전제하며 구매율은 5%로 가정(매년 동일을 전제)

- (지원금액) 육아용품 구매지출액은 700천원<sup>7)</sup>전제

할인율은 20%로 전제

② 탄생응원상품권 발행수수료는 33,856천원<sup>8)</sup> 전제

○ 자녀출산 무주택 가구 주거비 지원 관련

- (대 상 자) 주거비 지원 대상은 6개월 단위 1,380가구<sup>9)</sup>로 전제

- (지원금액) 3,600천원<sup>10)</sup> 전제(월 30만원으로 1년 총액을 기준)

※ 1차 선정된 대상에게 2년간 가구당 총 7,200천원이 소요됨

○ (발생기간) 2025년부터 비용이 발생하며 매년 소요됨을 전제

※ 추계기간(2025~2029년) 이후에도 계속 발생

○ 물가상승률 미반영

다. 추계기간 : 시행일로부터 5년(2025년~2029년)

라. 방법

○ 서울시 여성가족실 관련부서 문의 및 제공자료 활용 등

6) 145,462가구 ⇒ [(37,344명\*\*+ 204,690명\*\*)×60.1%\*\*\*]

\*'25년 예상 출생아수로 임신부 수 추정 / \*\*5세 미만 영유아수 / \*\*\*첫째아 비율로 양육가구수 추정

7)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상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인 10일분의 통상임금(상한액 803,820원) 수준 지원

8) 5,091,170,000원 × 0.665%

9) 무주택 가구 지원대상(가구) 산출근거

1. 지원 모수 추정 (2022년 서울시 주거실태조사 기준, 서울연구원)

① 서울시 전체가구 = 4,046,799가구

② ①에서 출생연도가 2021년, 2022년인 가구원이 포함된 가구 = 85,475가구

③ ②의 무주택 임차 가구 = 39,366가구

④ ③에서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2022년 기준) = 36,616가구

⑤ ④에서 주택면적 전용 85㎡ 이하 가구 = 32,459가구

⑥ ⑤에서 타 주거지원 프로그램 미수혜가구 = 17,177가구

2. 전세가 환산 기준에 따른 지원규모 및 예산추계 (22년 6월 기준-전월세 전환율 4.8% 적용)

⑦ 17,177가구 중 3억원 이하 가구 = 11,535가구(2년치) → 연간 5,767가구

⑧ 신청률 48% 반영시 = 총 2,768가구 (연 5,767가구×신청률48%) ⇒ 월 230가구

※'25.1.1.~6.30 출산가구 지원시 : 총 1,380가구(월 230가구×6개월)

10) 무주택 가구 지원금액(3,600천원) 산출근거

1. 신혼부부 주택 기본 평수 : 전용 60㎡ 이하 주택 (LH '신혼희망타운' 기준 참고)

- 서 울 아파트(60㎡↓)의 평균 전세가: 567만원/㎡ = 340백만원

\*R-ONE 부동산통계 부동산통계정보, 평균단위전세가격(천원/㎡) : 서울 5,672천원, 수도권 4,028천원,

- 수도권 아파트(60㎡↓)의 평균 전세가: 403만원/㎡ = 242백만원

- 서 울 아파트 전월세 전환율(4.6%) 적용시, 연 1,564만원(월 130.3만원)

\*KOSIS 통계청(KOSIS) 2024.1월 기준 지역별 아파트 전월세 전환율 : 서울 4.6%, 수도권 5.0%

- 수도권 아파트 전월세 전환율(5.0%) 적용시, 연 1,210만원(월 100.8만원)

2. 서울-수도권 아파트 월세 차액 30만원 · 주거비 차액 지원 = 30만원×12개월 = 총 360만원

### 3. 비용추계의 결과

○ 총비용 = 103,589,700천원(연평균 20,717,940천원)

(단위 : 천원)

구분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지출	1인 자영업자등 출산·휴가급여 지원비용(안 제4조의8)	3,537,600	3,537,600	3,537,600	3,537,600	3,537,600	17,688,000
	영유아 양육가정 육아용품 구매 지원 비용(안 제5조제1항제7호)	1,052,090	1,052,090	1,052,090	1,052,090	1,052,090	5,260,450
	자녀출산 무주택 가구 주거비 지원 비용(안 제5조제1항제8호)	5,198,650	15,134,650	20,102,650	20,102,650	20,102,650	80,641,250
	소계(a)	9,788,340	19,724,340	24,692,340	24,692,340	24,692,340	103,589,700
수입	-	-	-	-	-	-	-
	소계(b)	-	-	-	-	-	-
□ 총 비용(a-b)		9,788,340	19,724,340	24,692,340	24,692,340	24,692,340	103,589,700

주 : 서울시 여성가족실 제공자료를 토대로 작성

4. 덧붙이는 의견 : 동 개정안 사업은 2025년 시행예정으로 현재 기시행사업으로 볼 수 없어 비용추계 대상으로 판단하였음

### 5.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

담당관 오희선

추계세제팀장 김중헌

추계분석관 손제승

☎ 02-2180-7954

e-mail : smclt22@seoul.go.kr

##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1. 비용요소

- 1인 자영업자등 출산·휴가급여 지원비용(안 제4조의8)
- 영유아 양육가정 육아용품 구매 지원 비용(안 제5조제1항제7호)
- 자녀출산 무주택 가구 주거비 지원 비용(안 제5조제1항제8호)

### 2. 세부추계내역

가. 총비용 = 103,589,700천원(연평균 20,717,940천원)

$$\sum_{i=1}^5 (\text{①1인 자영업자등 출산·휴가급여 연평균비용} + \text{②육아용품구매지원 연평균비용} + \text{③자녀출산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 연평균비용})_i$$

$i$  = 비용추계 연차(2025년~2029년)



- 탄생응원상품권 발행 할인보전금 연평균 비용  
= 1,018,234천원  
= 유아용품 구매 지출액 × 할인율 × 이용자 가구수 × 구매율  
= 700천원 × 20% × 145,462가구 × 5%

- 탄생응원상품권 발행수수료 연평균 비용 = 33,856천원

③ 자녀출산 무주택 가구 주거비 지원 연평균 비용 = 16,128,250천원<sup>11)</sup>

- (연례반복 비용) 매년 소요비용이 동일함을 전제  
⇒ 업무추진비 + 인건비 + 운영비(홍보제작비)
- (매년 증가비용) 사업비의 경우 매년 달라지며 아래와 같음

(단위 : 천원)

구분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지출	○ 자녀출산 무주택 가구 주거비 지원 업무추진비용	4,650	4,650	4,650	4,650	4,650	23,250
	○ 자녀출산 무주택 가구 주거비 지원 업무 인건비	205,999	205,999	205,999	205,999	205,999	1,029,995
	○ 자녀출산 무주택 가구 주거비 지원 업무 운영비(홍보물제작)	20,001	20,001	20,001	20,001	20,001	100,005
	○ 자녀출산 무주택 가구 주거비 지원비용	4,968,000	14,904,000	19,872,000	19,872,000	19,872,000	79,488,000
□ 총 비용		5,198,650	15,134,650	20,102,650	20,102,650	20,102,650	80,641,250

- 자녀출산 무주택 가구 주거비 지원 업무추진 연평균 비용 = 4,650천원

- 자녀출산 무주택 가구 주거비 지원 업무 인건비 연평균 비용

$$= 205,999\text{천원}$$

$$= \text{사업전담인력}^{12)} + \text{기간제근로자등보수}^{13)} + \text{콜센터 지원인력}^{14)}$$

$$= 127,207\text{천원} + 33,768\text{천원} + 45,024\text{천원}$$

- 자녀출산 무주택 가구 주거비 지원 업무 운영비 연평균 비용 = 20,001천원

- 자녀출산 무주택 가구 주거비 지원비용

- 1차년도 사업비용 = 4,968,000천원

$$= 1,380\text{가구} \times 3,600,000\text{원}$$

$$\text{※ 2차년도부터 대상 변동(월 230가구} \times 12\text{개월}^{15)} = 2,760\text{가구)이 있음}$$

11) 5년 총소요 비용을 나누어 구한 금액(80,641,250 ÷ 5)

12) 42,402,028원 × 3명

13) 1,876,000원 × 6명 × 3개월

14) 1,876,000원 × 2명 × 12개월

15) 추계 전제 참조

$$\begin{aligned} - \text{2차년도 사업비용} &= 14,904,000\text{천원} \\ &= \text{1차 대상가구 지원비용} + \text{2차 대상가구 지원비용} \\ &= 4,968,000\text{천원} + (2,760\text{가구} \times 3,600,000\text{원}) \end{aligned}$$

$$\begin{aligned} - \text{3차년도 이후 사업비용} &= 19,872,000\text{천원} \\ &= \text{2차 대상가구 지원비용} + \text{3차 대상가구 지원비용} \\ &= 9,936,000\text{천원} + (2,760\text{가구} \times 3,600,000\text{원}) \end{aligned}$$